

투자설명서 변경 대비표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

- 유리 명품VISTA글로벌 증권투자신탁[주식]
- 유리 이머징뷰티 말레이인도네시아 증권투자신탁[주식]
- 유리 글로벌거래소 증권투자신탁1호[주식]

2. 변경 주요 내용 :

- ①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 연장 반영 (해외펀드만 해당)

| 구분 | 변경전 | 변경후 |
|--|--|---|
| 제 2 부.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| <p>나. 과세 (1) ~ (3) (생략) (4)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 -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 74 조제 3 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<u>2010년 12월 31일까지</u>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.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</p> | <p>나. 과세 (1) ~ (3) (생략) (4)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 -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<u>2011년 12월 31일까지</u>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 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.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</p> |

3. 시행예정일

2011년 8월 12일